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22. 4.1.~6.3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보과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보과 Tel. (044)200-6574, 6582

심사방식

- 1차 :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 2차 :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장려상 이상)
-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에 따라 일정, 방식 등 변경 가능
-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 가능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전문가 평가(80%)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개최 시)
- 국민 선호도 평가(20%) :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2022. 10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경진대회 및 시상식

2022. 11. 16.(예정)

※ 위 일정 및 경진대회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찾습니다

2021년 7월,
지방보조금
법령 시행!



잘 알고
사용해야겠다!

부정 수급 하면
반환·제재금 내고
벌칙까지 받는거야

지방보조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 중요재산 부기등기
- 감사인 검증 및 회계감사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제재부가금

다섯 배!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 등
(지방보조금법 제35조)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지방보조금법 제34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처분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 해당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내용 변경 등

신고절차 문의 (국번없이) ☎110

신고관련 안내 (국번없이) ☎139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검색

('21.12월 말 오픈예정)~!

78-6460000-000457-06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전략도천년

2022년 4월(제354호)

법무상식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I

새로운 판례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7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10
4. 공직선거법위반등	12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5

II

법령해석사례(법제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	17
2.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	20
3.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
4.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가 반드시 이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25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	27
6.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29

III

행정심판 재결사례

1. 행정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1
2. 가족묘지 설치 위반 이전명령 처분 취소청구	35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자동차 대여 업체 확인 방법	39
2. 렌터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40
3. 자동차 대여 시,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41
4. 예약한 차량이 아닌 대체 차량을 제공한다고 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42
5. 자동차를 대여할 때 보험가입을 꼭 해야 되나요?	43
6. 대여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들	44
7.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46
8. 예정된 자동차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48

V

법무단신

1. 피고인이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50
2.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53
3. 직접생산 의무조건 위반 중소기업, 1년간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55
4. 회사 합병 따른 매각위로금 받은 근로자가 약정기간 전 조기 퇴사한 경우	57
5. '정년은 60세...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규정됐다면	59
6. 돈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61
7.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63
8.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65

VI

최근 제정·개정 시행법령

· 공직선거법	67
· 아동수당법	70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영유아 보육 지원 ①	73
· Child Care support ①	75
· 婴幼儿保育支援 ①	78
· Hỗ trợ nuôi dạy trẻ ①	80

VIII

법제처 법나들이

·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83
-----------------------	----

새로운 판례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대법원 2021도8900

◇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형법은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 등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316조 제2항을 신설하여 ‘불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공·사(公·私)전자기록의 위작·변작(제227조의2, 제232조의2) 및 동 행사(제229조, 제234조) 등 컴퓨터관련 범죄를 신설하고, 재물손괴죄 등(제366조)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였다.

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또는 광기술 등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형법 제227조의2에 규정된 공전자기록등 위작죄에 관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관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

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기록에 포함된다(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사전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전자기록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참조).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각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취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아이디 등’이라 한다)는 전자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한편,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합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피해자의 ○○○○, □□□□, ●●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이 사건 아이디 등)를 알아내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아이디 등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 참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 계정 등에 접속한 행위 및 이를 통해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인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였음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대법원 2022도755

◇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48조 제2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지인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대법원 2021도13203

◇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음



- ☞ 검사는 사진 파일 전부와 이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범죄일람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진 몇 장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이지가 불분명함
- ☞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4

공직선거법위반등

* 대법원 2021도16335

- ◇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무렵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도616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이와 구별되는 선거운동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을 가리키는 것에 한정되거나 그 명칭이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발언의 전



제 맥락,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18 판결).

2)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1인 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전국단위의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등록신청의 주체가 되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도 정당이며(제61조 제1항),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도 후보자 개인에게 선거벽보(제64조)나 현수막(제67조)의 제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79조 제1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정당에 대해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신문광고(제69조), 방송광고(제70조), 인터넷광고(제82조의 7) 등 전국 단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하고(제146조 제2항),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이 표시된다(제150조 제1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제189조 제1항).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처음부터 정당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이른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

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 311 결정 참조).

3) 앞서 본 법리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특징과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운동에 대한 규율을 종합하여 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위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4호).

☞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 전당대회에서 위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고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대법원 2019두58407

◇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

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시광고법의 규정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조사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위 대법원 2019두59639 판결 참조), 그 시점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다.

- ☞ 원고 등이 가슴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여 위 제품을 생산·유통하여 온 사안임. 대법원은,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원고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2. 3. 21.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로, (2) 부당한 표시와 함께 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위 제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어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3)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므로, 원심이 원고 등이 위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때에 부당한 표시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관련)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함)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함)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그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종합건설업자는 그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 재하도급할 수 있는 다른 경우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와 재하도급하려는 건설공사가 모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와 다르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1호의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제2항 단서(각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공사만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만을 각각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이하 “상호업역진출제한”이라 함)하고 있었던 점(각주: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을 고려하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서는 하수급인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 그가 하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는 상호업역진출제한 제도에 따라 “종합공사”로 한정되었는바,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는 같은 법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일부 표현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제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정리적 차원의 개정일 뿐, 해당 개정을 통해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각주: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것)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6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전문건설업자 간 상호업역진출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상대방의 업무영역에 진출(이하 “상대업역진출”이라 함)하여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총



도급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규정(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도 함께 묶으로써 “도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업역진출에 대하여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전문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승낙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상호업역진출제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급단계”에서 상대업역진출이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도급단계보다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하도급단계”에서 오히려 재하도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만 해당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종합건설업자는 그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2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를 말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각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세대원(각주: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이전한 후에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각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인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여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양도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러한 양도가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과 그에 따른 양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거안정을 달성하되, 다만 근무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각주: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2003. 11. 의안번호 제162846호로 제안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만약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수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 없이 예외 사유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어, 투기수요 차단과 주거안정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 사정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시점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 조합원 지위를 전매하는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이라는 일정한 사

실이 발생한 후 건축물의 매매를 지연하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특별한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 거래를 사실상 방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3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질의요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되어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각주: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각주: 2005. 12. 29.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됨)”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4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각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각주: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4호 참조), 이하 같음)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등의 매수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해당 구역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도 일반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등의 매수에 잘 응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의 매수에 쉽게 응하도록 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등의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5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각주: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각주: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의미하는지?



회 답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 제4조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추 것을 규정(제3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서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국민권익위원회 1999. 10. 18. 재결 1999-05929 심판례 참조).

또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각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관광진흥법」 제4조, 제6조, 제7조 참조))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각주: 영업악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면서 초기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임)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추어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에서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사례6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3항에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료의 증액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기간이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종전의 임대료보다 증액된 임대료(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 비율만큼 증액된 임대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료보다 증액된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27. 회신 21-0203 해석례 참조).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임대차계약”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어떠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그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인지, 아니면 종전 임차인과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다시 체결한 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 종전의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각주: 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을 해석할 때에는 임차인 권익 보호 및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 종전의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료의 증액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료의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나 조건 등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4조제3항의 문언대로 임대차계약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제1항)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무기간(제43조) 및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제44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의 제한 사유를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료보다 증액된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III

행정심판 재결사례

행정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 중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8. 청구인에게 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촌계의 간사로 **군 **면 **리 ***-*번지의 피청구인 소유 건축물에서 2013. 7.부터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2차 촉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8.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8. 청구인에게 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¹⁾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1) **어촌계 특산물 판매장은 어촌계 자금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보조금으로 건축물이 완성되어 농림수산업 시행지침에 의해 완성된 건축물로 유지관리 책임이 어촌계에 있으며, 행정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어촌계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특산물 판매장 신축 부지에 등

1) 행정심판 청구서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20.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직권 정정함.

의한 것이지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안내소 등 사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며, 아직도 건물 부지가 어촌계원(윤**) 명의로 되어 있어 행정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

- 1) **군 **면 **리 951-2번지의 건축물 소유자는 피청구인으로 공유재산이 맞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어촌계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위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 법령

- 1) 공유재산법 제83조
- 2) 「행정대집행법」 제2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어촌계의 간사로 **군 **면 **리 ****-번지의 피청구인 소유 건축물에서 2013. 7.부터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2)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20. 5. 14. 청구인에게 배달완료되었다.
- 4) 청구인은 2020. 8.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 가) 공유재산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



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 가) 대집행 계고 처분'이며, 청구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변상금 조치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행위만 있을 뿐, 변상금 부과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나) 이 사건 처분 중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소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안내소 등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이 피청구인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점유자인 청구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 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계고처분의 목적이 된 의무는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행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등)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의무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은 위법하다.

- 다) 이외에 이 사건 처분 중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7조

(재결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족묘지 설치 위반 이전명령 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6. 청구인에게 한 **군 **읍 **리*~**번지에 설치된 가족묘지를 2020. 12. 15.까지 이전하라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4. 경 **군 **읍 **리 *~**번지에 합동 제상 1개, 평장비석 10개, 부지 내 골재 및 대리석 등의 석물을 설치하는 등 가족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28. 청구인의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처분(2020. 5. 29.)을 거쳐 2020. 6.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9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가족묘지 이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8.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청구인이 2020. 6. 16. 청구인에게 한 **군 **읍 **리 8-14번지에 설치된 가족묘지를 2020. 12. 15.까지 이전하라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¹⁾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 1)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 설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로 설치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허가하였다.
- 2) 이 사건 묘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적법하다.
- 3) 이 사건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적법하다.

1) 행정심판 청구서의 청구취지는 '본인은 사전묘지이전신고 및 허가를 관할청에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함을 인정하나 묘 이전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직권 정정함.

나. 피청구인

- 1) 장사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득하고 가족묘지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2020. 4.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 설치된 이 사건 묘지의 설치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가족묘지 설치 제한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설치된 묘지에 대한 사후 허가 신청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묘지로부터 60m 떨어진 곳에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인 **마을이 위치하여 가족묘지 설치 제한지역(300m 이내)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묘지가 가족묘지 설치 제한지역에 있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묘지는 **마을의 진출입로에 위치하며, 완전히 차폐되어 있지 않아 마을 초입의 농어촌도 제15호선에서 이 사건 묘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마을 경로당에서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바, 장사법 제1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 설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 1) 장사법 제14조, 제31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및 현장 검증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20. 4.경 **군 **읍 **리 *-**번지에 합동 제상 1개, 평장비석 10개, 부지 내 골재 및 대리석 등의 석물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하였고, 이는 **마을, **마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 2) 피청구인은 2020. 5. 28. 청구인의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20. 5. 28. 현장확인을 하였고, 2020. 5. 29. 사전처분을 거쳐 2020. 6. 16. 장사법 제14조 제9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4) 청구인은 2020. 8.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제 법령

- 가) 장사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 법 제14조 제9항에 따르면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2-바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5] 행정처분기준-2-가에 따르면 “법 제14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이전명령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4조 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1차 위반에 대하여는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설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으며, 사전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 설치 제한지역에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한 후에 이루어진 사후 허가 신청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장사업무 안내'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은 한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20호는 일종의 기준이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및 2020. 12. 15. 현장 검증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묘지로부터 60m 떨어진 곳에는 **마을이 위치하고, 247m 떨어진 곳에는 **마을이 위치하므로 이 사건 묘지가 가족묘지 설치 제한지역(3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ⅴ 사업계획서
 - ⅴ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및 너비가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 ⅴ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ⅴ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

렌터카를 예약하려니 예약금이 필요하네요.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자동차대여 예약 시 참고사항

✓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렸는데요.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 임차조건의 변경

-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조건을 변경(대여기간 변경 및 운전자 추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예약을 하였는데요. 당일에 빌리러 갔더니 제가 예약한 차량의 수리로 대체차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먼저 예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계약해지 사유 및 방법

-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5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보험가입

-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는 대인·대물보험 등(자차보험 등 제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자차보험)
 - 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6

자동차를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운전 중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

- ☞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유상운송 등 금지

- ☞ 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해서는 안 됩니다.
-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의대여 금지

- ☞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처리 등

☞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 고객은 위 보상에서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고객의 자기부담금 지급대상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휴차손해는 제외)은 자동차에 대해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8

예정된 자동차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추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지연반납

-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 미반납

-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자동차 (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회수 조치	V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V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구분	대상
자동차 (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V 자동차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함



1

피고인이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검사 측 증인이 반대신문을 위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054).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양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서 200만원을 빌려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한 B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이어 1심 재판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진술했다. 그런데 그는 변호인이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속행된 4회 공판기일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6회 공판기일까지는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증인신문절차를 속행하며 B씨에 대해 증인소환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소재불명 상태가 되자 더이상 증인소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B씨의 진술 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조씨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 제314조에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요



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다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조서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돼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과 달리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진술조서와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라는 것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데, 같은 법 제314조는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3221)에서 최근 “B씨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손배 책임 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집을 포함해 C씨 재산 전부에 관해 이듬해 12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A씨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었고, 경매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지 않고,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서만 계약을 맺게 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임차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 등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A씨가 임차한 건물을 포함해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D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39억원)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5억원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A씨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B씨나 중개보조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B씨나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스스로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B씨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고, B씨의 배상책임을 A씨가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3

직접생산 의무조건 위반 중소기업, 1년간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중소기업이 조달청 입찰계약상 직접생산 의무 조건을 위반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했더라도 1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납품한 물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다른 계약조건들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업체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3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2019년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국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는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이행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5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또다른 입찰에도 참가했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앞선 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한 뒤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해 7월 또다시 국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입찰의 차순위자인 B사가 서울지방조달청에 “A사는 C사에 하청을 줘 물품을 제작·납품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선행계약 이행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20년 12월 A사가 선행계약을 이행하면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A사에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립에 필요한 장소·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립공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수행한 이상 A사가 C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등으로 공정 진행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A사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실제 A사가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이행하면서 공급한 배터리 시스템 등 물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외 A사가 다른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입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A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참가자격 1년간 제한은) 실제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A사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조달청의 처분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A사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그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

회사 합병 따른 매각위로금 받은 근로자가 약정기간 전 조기 퇴사한 경우

회사 합병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약정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토록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적인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퇴직 근로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위로금 반환 소송(2017가2022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 퇴직의 자유 제한하거나

계속적 근로 강요로 보기 어려워

2014년 삼성토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은 ‘삼성토탈 매각대응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운동에 나섰다. 한화 측은 주식 인수 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고 이에 삼성 측은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해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11월 26일 이전에 입사 시험해 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4000만원 + 상여금 기초 6개월분(평균 6000만원)’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4월말 위로금을 받았던 A씨가 약 한 달 만에 퇴사하면서 위로금 반환이 문제됐다. 약정대로라면 위로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A씨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계속 근로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위로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주식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사측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했는데,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주식 매각 사실을 이미 알고 입사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매각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비춰보면 회사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약정을 하고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나 액수 등을 종합하면 A씨 등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어 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

‘정년은 60세…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규정됐다면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몇 살부터 적용될까. 대법원은 ‘만 55세’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18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유업과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만 60세에 적용하는 임금피크율을 높인 것 외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정년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만 60세 정년까지

5년간 임금피크 시행으로 해석해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와 노조간에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봐야할지 이견이 생긴 것이다. 남양유업과 노조는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2017년도 단체협약에서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양측은 2019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했고, 2019년 3월 지노위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19년 6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사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만 55세’부터로 봐야 한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만 56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회사 패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과 사업장의 정년·임금피크제 연혁 및 이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 및 시행 경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적용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다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춰 ‘만 55세(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 7월 1일, 생일이 하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남양유업과 노조 측이 유독 2014년 및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만 56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1년씩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다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생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남은 기간만 마지막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6

돈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배임(인정된 죄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477).

A씨는 2016년 2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1만2500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원리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했음에도 2016년 7월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배임)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사기)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식 1만2500주를 양도했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용 당시 A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A씨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5000만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해당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차용 당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채무 5000만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면서 “따라서 A씨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돼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7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수인이 지출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매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당시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07816)에서 “고양시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양시는 2012년 12월 킨텍스 부지 일부인 4만2718.5㎡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1500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년 11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는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같은 달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곧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5년 9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폐토석과 건설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이 잔뜩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A사는 2016년 7월까지 B사를 통해 매립폐기물을 배출·처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비용으로 12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A사는 2018년 2월 고양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함께 폐기물 처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지하 매설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시는 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

행하면서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했거나 적어도 폐기물이 매립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인도 방식 또는 태양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해 부수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 할 수 없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는 토지 지하에 매립돼 있던 폐토사 8000여톤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액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사의 정확한 성상을 알 수 없고, 해당 토사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인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부분까지 폐기물 또는 오염토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8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재개발조합장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가 “조합장이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도, 법원이 “선임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21다291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2016년 7월 B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19년 12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 1호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2호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조합원인 A씨는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조합장 지위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며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

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C씨가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B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A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공직선거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9조제8항,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등).

다.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2조제2항 단서,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제정·개정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세”를 “18세”로 한다.

제7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의”를 “제1항 전단의”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0호 중 “사용한 자”를 “사용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장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아동수당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퍼센트, 1세 36.6퍼센트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세”를 “8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세”를 각각 “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세”를 “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동수당은”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

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지원 ① - 양육수당

양육수당

>>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1., 381쪽).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81쪽).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36 ~ 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양육수당 신청

>> 양육수당 신청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Child Care support ① – Home care allowance

Home care allowance

>> Support for home care allowance

-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child home care allowanc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do not use child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in consideration of the ag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rticle 34-2 (1) of the Child Care Act).
- Provided, That if an infant or young child stays overseas for at least 90 day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uspend the provision of a child home-care allowance during such period (Article 34-2 (3) of the Child Care Act).
-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larify the reason in writing and notify the infant's or young child's guardian of such fact (Article 34-2 (4) of the Child Care Act).

Support for home care allowance

>> Support target

-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are raised at home without using child care centers, kindergartens (including special schools), full-time child care services, etc. can receive child care allowanc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ge 371 of 2021 Guidelines for Child Care Project, February).

- The care allow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provid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meet the above requirements and registered with disabilities, and the rural child care allowance is provid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meet the above requirements to suppor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 Support amount

-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hild, KRW 100,000 to 200,000 per month will be provided as follows (Page 371 of 2021 Guidelines for Child Care Project).

Age (Month)	Home Care Allowance	Age (Month)	Rural Home Care Allowance	Age (month)	Home Care Allow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0 ~ 11	KRW 200,000	0 ~ 11	KRW 200,000	0 ~ 35	KRW 200,000
12 ~ 23	KRW 150,000	12 ~ 23	KRW 177,000		
24 ~ 35	KRW 100,000	24 ~ 35	KRW 156,000		
		36 ~ 47	KRW 129,000		
From 36 months to 86 months	KRW 100,000	From 48 months to 86 months	KRW 100,000	From 36 months to 86 months	KRW 100,000

Application for home care allowance

>> Application for home care allowance

- Guardians of infants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to the Mayor of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head of the Si/Gun/Gu. In such cases, when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is not under his/her jurisdiction receives the application documents, he/she shall transfer the relevant documents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head of a Si/Gun/Gu (Article 34-4 (1) of the Child Care Act and Article 35-6 (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hild Care Act).

1. Application for child care fees (home care allowances)
2. An identification card or document verifying the identity of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child care fees (referring to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certificate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passport,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3. Family relation certificate

婴幼儿保育支援 ① - 养育补贴

养育补贴

>> 养育补贴支援

- 对于不使用托儿所的婴幼儿，国家及地方自治团体基于其婴幼儿年龄的考虑，提供养育所需的费用（补贴）支援。（《婴幼儿保育法》第34条之2第1款）
- 但享受养育补贴的婴幼儿在海外停留90天以上的，国家及地方自治团体停止其间养育所需的费用支援。（《婴幼儿保育法》第34条之2第3款）
 - 此时，保健福祉部长官及地方自治团体负责人应以书面形式向相关婴幼儿监护人通知明确的理由。（《婴幼儿保育法》第34条之2第4款）

养育补贴支援

>> 支援对象

- 不利用托儿所、幼儿园（包括特殊学校）、全天托育等服务，而选择在家庭养育的婴幼儿也有权享受养育补贴支援（保健福祉部，《2021年保育事业指南》，2021年7月，第375页）。
 - 符合上述条件且作为残疾人登记在册的婴幼儿有权享受残疾儿童养育补贴；符合上述条件且取得农渔村支援资格的婴幼儿则有权享受农渔村养育补贴。

>> 支援金额（单位：韩元）

- 根据儿童月龄定额提供养育补贴，支援金额达每月10-22万韩元左右，详情见下。（《2021年保育事业指南》，2021年2月，第375页）



年龄 (个月)	养育补贴	年龄 (个月)	农渔村养育 补贴	年龄 (个月)	残疾儿童 养育补贴
0 ~ 11	20万韩元	0 ~ 11	20万韩元	0 ~ 35	20万韩元
12 ~ 23	15万韩元	12 ~ 23	17万7千韩元		
24 ~ 35	10万韩元	24 ~ 35	15万6千韩元		
		36 ~ 47	12万9千韩元		
36个月以上 ~ 未滿86个月	10万韩元	48个月以上 ~ 未滿86个月	10万韩元	36个月以上 ~ 未滿86个月	10万韩元

申请养育补贴支援

>> 申请养育补贴支援

- 欲申请养育补贴的婴幼儿监护人应将下列材料（包括电子文件）提交给辖区特别自治市市长、特别自治道知事、市长、郡守、区厅长。这时如果是非辖区的特别自治市市长、特别自治道知事、市长、郡守、区厅长收到材料，须立即把申请材料移交给辖区特别自治市市长、特别自治道知事、市长、郡守、区厅长（《婴幼儿保育法》第34条之4第1项、《婴幼儿保育法施行规则》第35条之6第1项）。

1. 养育补贴支援申请书

2. 可证明拟支援申请人身份的身份证明或资料（身份证、驾驶执照、残疾人登记证、护照及其他由保健福祉部长官指定的资料）

3. 家族关系证明书

Hỗ trợ nuôi dạy trẻ ① - Trợ cấp nuôi dạy

Trợ cấp nuôi dạy

>> Hỗ trợ tiền trợ cấp nuôi dạy

- Đối với trẻ không đi học ở nhà trẻ, chính phủ và đoàn thể tự trị địa phương hỗ trợ chi phí cần thiết cho việc nuôi dạy trẻ trong đó cân nhắc đến điều kiện kinh tế của người bảo hộ và độ tuổi của trẻ (Khoản 1 Điều 34.2 「Luật nuôi dạy trẻ em」)
- Tuy nhiê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rẻ được nhận hỗ trợ chi phí cần thiết cho việc nuôi dạy lưu trú ở nước ngoài liên tục trong hơn 90 ngày thì chính phủ và đoàn thể tự trị địa phương sẽ dừng việc hỗ trợ này lại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Khoản 3 Điều 34.2 「Luật nuôi dạy trẻ em」)
 -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ộ trưởng Phúc lợi và Y tế và người đứng đầu đoàn thể tự trị địa phương phải thông báo cho người bảo hộ trẻ và nói rõ lý do bằng văn bản (Khoản 4 Điều 34.2 「Luật nuôi dạy trẻ em」)

Hỗ trợ tiền trợ cấp nuôi dạy

>> Đối tượng hỗ trợ

- Những trẻ được nuôi dạy tại nhà, không sử dụng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cả ngày, trường mẫu giáo (bao gồm cả trường học đặc biệt), nhà trẻ thì có thể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nuôi dạy (Bộ Phúc lợi và Y tế, 「Hướng dẫn về dự án nuôi dạy trẻ năm 2021」, 2. 2021., Trang 375).
 - Đối với những trẻ thỏa mãn điều kiện trên và đã được đăng ký người



khuyết tật thì có thể được nhận trợ cấp nuôi dạy trẻ khuyết tật, còn đối với những trẻ thỏa mãn điều kiện trên mà có đủ điều kiện tư cách nhận hỗ trợ dành cho làng nông ngư nghiệp thì sẽ được nhận trợ cấp nuôi dạy dành cho làng nông ngư nghiệp.

>> Số tiền hỗ trợ

- Tùy theo tháng tuổi của trẻ mà khoản tiền hỗ trợ định mức là khoảng 100-200 ngàn won mỗi tháng như dưới đây (「Hướng dẫn về dự án nuôi dạy trẻ năm 2021」, Trang 375).

Độ tuổi (tháng tuổi)	Trợ cấp nuôi dạy	Độ tuổi (tháng tuổi)	Trợ cấp nuôi dạy dành cho làng nông ngư nghiệp	Độ tuổi (tháng tuổi)	Trợ cấp nuôi dạy trẻ khuyết tật
0 ~ 11	200 ngàn won	0 ~ 11	200 ngàn won	0 ~ 35	200 ngàn won
12 ~ 23	150 ngàn won	12 ~ 23	177 ngàn won		
24 ~ 35	100 ngàn won	24 ~ 35	156 ngàn won		
		36 ~ 47	129 ngàn won		
Từ 36-86 tháng	100 ngàn won	Từ 48-86 tháng	100 ngàn won	Từ 36-86 tháng	100 ngàn won

Đăng ký nhận trợ cấp nuôi dạy

>> Đăng ký nhận trợ cấp nuôi dạy

- Người giám hộ trẻ em muốn đăng ký phụ cấp cấp dưỡng thì phải nộp lên các tài liệu sau (bao gồm văn bản điện tử) lên Tỉnh trưởng tỉnh tự

trị đặc biệt, thị trưởng thành phố tự trị đặc biệt hoặc thị trưởng, quận trưở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khi Tỉnh trưởng tỉnh tự trị đặc biệt, thị trưởng thành phố tự trị đặc biệt hoặc thị trưởng, quận trưởng không thuộc khu vực liên quan nhận được đệ trình, các tài liệu liên quan phải được chuyển ngay lập tức cho Tỉnh trưởng tỉnh tự trị đặc biệt, thị trưởng thành phố tự trị đặc biệt hoặc thị trưởng, quận trưởng có liên quan (Khoản 1 Điều 34.4 「Luật nuôi dạy trẻ em」 và Khoản 1 Điều 35.6 「Quy tắc thi hành Luật nuôi dạy trẻ em」).

1. Đơn đăng ký xin hỗ trợ trợ cấp nuôi dạy
2. Giấy chứng nhận nhân thân hoặc các loại giấy tờ có thể giúp xác nhận được nhân thân của người định đăng ký hỗ trợ chi phí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giấy phép lái xe, giấy đăng ký người khuyết tật, hộ chiếu và các giấy tờ khác theo sự chỉ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Phúc lợi và Y tế)
3.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VIII

법제처 법나들이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며칠 뒤 아파트 주민위원회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집에서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인지 불분명한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햇빛을 잘 가려주는
커튼을 공동구매하는
건 어떨까요?

신축된 빌딩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햇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는 주민들도 있으니
우리가 참을 한도를
넘은 거 같아요.
그러니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거예요.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① 있다 ② 없다



지난 호 정답 ▶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213동 옥상은 213동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정답은 1. 일부 공용 부분이다